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4199
----------	-------

제안연월일 : 2025. 11.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924	안철수의원	2025. 3. 13.	2025. 8. 18.
	8979	이주영의원	2025. 3. 17.	2025. 8. 18.

나.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9.23.)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5. 9. 24.)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음. 하지만 방해 행위가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과정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상담시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용되기 어려우며, 상해에 이르지 않는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법적 미비점이 있음. 응급실 내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행위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응급환자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것으로, 폭행으로 인해 상해에 이르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폭행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로만 명시해 독립된 외상센터에서 응급의료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는 개별 의료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응급의료 조치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응급의료 정의와 같이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로 명확히 규정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를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며, 처벌규정을 강화해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60조).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해금지 응급의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폭행 등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함(안 제12조제1항, 제12조제3항 신설).

나.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를 응급의료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안 제60조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구조”를 “상담·구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응급의료종사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0조제1항 중 “응급실”을 “응급실(응급실 외의 장소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포함한다)”로, “폭행하여”를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폭행하여”로, “처하고”를 “처하며”로, “처하며”를 “처하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간 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 사를 <u>포함한다</u>)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u>구조</u>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 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 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 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① ----- ----- ----- -----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담·구조----- ----- ----- ----- ----- ----- ----- ----- ----- -----.
② (생 략)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③ <u>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 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응급의료종 사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u>

제60조(벌칙)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 ④ (생략)

제60조(벌칙) ① -----
-----응급실
(응급실 외의 장소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포함한다)--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폭행하여---

-----처하며-----

-----처하고-----

-----.

② ~ ④ (현행과 같음)